

감사위원회규정

Version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Eco Lab

목 차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 범위)	4
제3조 (권한)	4
제2장 구성	4
제4조 (구성)	4
제5조 (위원장)	5
제3장 회의	5
제6조 (소집권자)	5
제7조 (소집절차)	6
제8조 (결의방법)	6
제9조 (부의사항 등)	7
제9조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8
제9조3 (감사인의 선정)	9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10
제11조 (통지의무)	10
제12조 (의사록)	10
제4장 보칙	10
제13조 (독립성확보)	10
제14조 (의견교환)	11
제1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11
제16조 (감사록의 작성)	11
제17조 (규정의 개폐)	11
부칙	12
제1조 (시행일)	12
부칙	12
제1조 (시행일)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⑤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 및 3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 가진다. 단,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의사항 등)

-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 (6) 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 (7) 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운영실태 평가
- (9) 내부감사 계획 및 결과
-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승인(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

4. 기타 법령·정관·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 2.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 3.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 5. 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①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 (감사인의 선정)

- ① 위원회는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평가결과 등을 문서화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인 선정 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후에는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을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정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감사인 선정 진행시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단, 명확히 하자면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 (독립성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감사위원회규정

Document #: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

Version #: 2.0

Issue Date: 2023/3/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